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7.(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9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30일

3.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제13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3항)
- 사용요건 확대(안 제4조제3항)
- 용도중복 삭제 및 명확화, 기금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조항삭제(안 제6조제3항)
- 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 및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교육재정의 위축 등에 대비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내·외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지방교육재정과-5595(2022.10.31.)>에 따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과 용도와 중복되는 부분, 포괄적인 용도 사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임.

* 중복 용도: '민자사업(BTL) 지급금 충당,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투자

○ 또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안정화 기금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인 세수 감소 추이에 따라 교부금 감액이 예상되어 사용요건을 직전년도 대비 세입 감소 시로 변경하여 현행 기준보다 기금 사용을 확대하는 것임

○ <2022년 자치법규 실태조사 결과-예산과-257(2023.01.10.)>에 따라 법제처 의견제시(2015.08.20.회신 15-0207)를 반영하여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던 기금 운용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임.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제3항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¹⁾에서 정한 5년의 범위 이내이고,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2023.03.16.) 심의(별첨)를 거쳐 상위법의 조건을 충족함
-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제3항“적립”을 “전년도 말 직전 적립”로 변경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며, 제3항제1호는 “최근 3년 평균”을 “직전년도”로 변경하여 2023년도 세수 결손,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고자 사용 가능 여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함

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사용 요건 개정 시 사용가능한 기금 예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보통교부금	2,122,839	2,393,862	3,368,314	3,144,912	2,855,580
	일반회계전입금	330,818	354,430	420,290	414,417	376,291
	합계	2,453,657	2,748,292	3,788,604	3,559,329	3,231,871
세입 3년 평균금액					2,996,851	3,365,408
1. (현행) 보통교부금+일반회계전입금 3년 평균 감소 금액					△562,478	133,537
2. (교육부 예시안) 보통교부금 감소 금액					223,401	289,332
3. (개정안) 보통교부금+일반회계전입금 직전년도 감소 금액					229,275	327,458

* 4월 기준 세수 결손 3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여 2,893억원 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

○ 안 제4조제3항제3호는 “지방채상환 또는 임대형민자사업(BLT)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로 변경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금은 충청북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¹⁾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 안 제4조제3항제4호는 “장기간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²⁾에 따른 사업 이외의 장기간”으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로, 제5호 “재정여건상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용어정비를 통한 기금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임.

- 안 제6조(기금의 운영 심의)제3항의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위원회 구성),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위원회의 회의), 안 제10조(간사)를 신설하여 “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심의를 받던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¹⁾에서 정한 별도의 충청북도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1)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20. 6. 9.]

- 부칙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 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기금 심의를 본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을 부칙에 반영한 것임.

다. 종합의견

- 현재 세입 규모 감소 추이로 교육비특별회계 평균감소액이 3,752억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을 ‘최소 3년 평균 금액’으로 운용할 경우 통합안정화기금을 약 1,335억 전출할 수 있으나, ‘직전년도 금액’으로 개정할 경우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약 3,274억을 전출할 수 있으므로 교육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재정안정화 계정 적용기간>

구분	최근 3년 평균 금액	직전년도	개정준비중
적용 교육청	13개(현행)	4개(개정예정)	3개(대구, 강원, 울산)

-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시 교육청 자체 자원과 재원을 활용하여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자정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 기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후,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정하여 재정안정화 통합계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등 향후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기금 사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별첨>

공감하는 미래교육, 동행하는 충북교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신 충청북도교육감(예산과장)

(경유)

제목 제1회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1. 관련: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 2023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 일시 및 장소: 2023. 3. 16.(목) 14:00,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204호
 - 나. 안건 및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1	2022년도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개선안	원안가결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안	"
3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4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결산안	"
5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성과분석안	"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안	"

※ 재적위원 12명, 참석 위원 7명

- 붙임 1. 등록부 1부.
2. 회의록(별첨) 1부. 끝.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관인생략

★주무관 김선순 과장 박정희 부위원장 주병호 위원장 2023.03.22.
천법산

협조자

시행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2023. 3. 22.) 접수 예산과-2420 (2023. 3. 22.)
위원회-3

우 2863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산남동) / http://

전화번호 043-290-2134 팩스번호 043-290-2748 / Jessy4548@korea.kr / 공개

불편공문서 개선 요청 주소 (https://baro.cbe.go.kr/pain)